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938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
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2. 10. 9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2. 10. 12.(금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2. 10. 17.(수)

2. 개정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,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보육사업의 확대와 보육제도의 변화 등 다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(안 제3조)
 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의 구성에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,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하,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등 구성비율을 반영함(안 제4조)
- 나.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된 보육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함(안 제10조)
 - 2012. 2. 3 법 개정사항을 반영,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
 - 위탁대상은 현재 반구어린이집 외 3개소이나, 향후 위탁대상은 신설을 감안하여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함
 - 수탁자 선정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, 중구보육 정책위원회나 중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함
- 다. 법 제7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의무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(안 제21조)
 - 정보센터 내 자료실, 상담실, 교육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 - 보육정보 제공과 상담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,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산원·영양사·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음
- 라. 위탁계약 시 필요한 “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” 안을 기존 안에서 일부 보완하여 첨부함(별지 제1호서식)

4. 근거법령 :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

5. 검토의견

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다만 안 제5조제1항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“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